성주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: 성주군수
2. 개정이유
 ○ 성주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단지 내 법정리의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3. 주요내용
 ○ 성주2 일반산업단지 내 조정현황
 - 법정리 경계 조정지역 : 성주읍 학산·금산리 일원
 - 단지내 조정(변경)면적
 · 학산리 : 당초 681,337㎡ → 조정 691,787㎡(+10,450㎡)
 · 금산리 : 당초 268,450㎡ → 조정 258,000㎡(△10,450㎡)
4. 참고사항
 가. 관련법령
 ○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의2
 ○「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」 제9조의2
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 다. 성별영향평가분석 : 원안동의
 라. 규제심사 : 해당없음
 마. 입법예고 : 의견없음(2016. 10. 6 ~ 10. 26)
5. 검토의견
 ○ 본 조례 개정안은 성주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라 산업단지부지 내의 성주읍 학산리와 금산리 일원에 대한 법정리의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
 ○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학산리의 면적은 당초 681,337㎡에서 691,787㎡로 조정되어 10,450㎡가 증가되고, 금산리는 당초 268,450㎡에서 258,000㎡로 조정되어 10,450㎡가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.
 ○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행정구역 조정안은 해당지역 주민대표 등 관계자들과 행정구역 조정협의회를 거쳐 결정된 사항으로서 조례를 개정·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